

# 증인참석 · 노동위원회 출석 시 공민권행사 인정여부와 임금지급 문제

## 1. 서설

근로자가 회사업무와는 무관한 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와 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할 때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권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임금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공민권 행사와 관련법 및 공민권 행사의 의의

###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공민권 행사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합니다.

## 3. 공민권 행사인정 및 임금지급여부

### 1)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 ① 공민권행사 인정여부

근로자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아 참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어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그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1978.12.30, 법무 811-28791 )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舊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음.

### ②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1980.01.13, 법무 811-29559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③ 임금지급의 예외 : 공민권 행사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국민투표법 제4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2)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경우

### ① 공민권행사 인정여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회의에 당사자로 출석하거나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발 등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할 경우 등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질이 강하다고 보아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2007.08.08, 근로기준법-5828 )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② 임금지급 여부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결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증인출석 또는 당사자 자격으로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건에 대하여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그와 관련된 근로시간 인정 및 임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연차유급휴가처리를 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3. 11. 18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